

등록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으로서,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,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.

1. 회계법인 개황

1-1 회계법인명				
1-1-1 회계법인명 변경 여부				
1-1-2 변경 전 회계법인명(1-1-1에서 “예”인 경우)				
1-2 회계법인 고유번호				
1-3 회계법인 설립일				
1-3-1 회계법인 등록일				
1-4 당기 사업연도	제○기	YYYY년 MM월부터	YYYY년 MM월까지	○○개월
1-4-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				
1-4-2 결산기 변경 내용(1-4-1에서 “예인 경우)	MM월에서 MM월로 변경			
1-5 대표자명				
1-6 전화번호				
1-7 주소	우편번호			
1-8 신고서 제출 공문 사본 첨부				
1-9 최근 3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				

기재상의 주의

- 1-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.
- 1-3-1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일자를 기재한다.
- 1-4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.
- 1-6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.
- 1-8 감사인이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. 동 공문에는 회사명, 대표이사 직인 및 “당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,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.”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.
- 1-9 산정기준일(8월 31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합병·분할기일(등기일), 회계법인명(금감원 고유번호)을 기재한다.

2. 신고 사항

2-1 소속 공인회계사 수	감사가능 등록					수습		
2-1-1 경력기간별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 수	40년 이상	30년 이상	20년 이상	15년 이상	10년 이상	6년 이상	2년 이상	2년 미만
2-1-2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파일 첨부								
2-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여부								
2-3 회계법인 총 매출액								
2-3-1 회계감사업무 매출액								
2-4 등록요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								
2-4-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평균 인원수								
2-4-2 평균 인원수 계산내역 및 업무 증빙 파일 첨부								
2-5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여부								
2-6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								

2-7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			
2-8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			
2-9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	1년 이내	1년~2년 이내	2년~3년 이내
2-9-1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 세부내역 파일 첨부			
2-10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여부			
2-10-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세부내역 파일 첨부			
2-11 금융회사 감사 관련 자료제출 여부			
2-11-1 금융회사 감사 관련 자료 파일 첨부			
2-1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			
2-13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내역			
2-13-1 해당 감사보고서의 대상회사명			
2-13-2 해당 사업연도			
2-13-3 소속 공인회계사명			
2-14 감리결과 외부 공개 개선권고사항 유무		▼ 예 / 아니오	
2-14-1 개선권고사항 세부내역 파일 첨부			
2-15 산업전문가 보유 여부		▼ 예 / 아니오	
2-15-1 산업전문가의 해당 산업			
2-15-2 산업전문가 보유현황			

기재상의 주의

- 2-1 산정기준일 현재 소속 “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”(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여 회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 공인회계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수습 공인회계사의 수를 기재한다.
- 2-1-1 산정기준일 현재 감사인(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말한다)에 소속된 경력기간별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 수를 기재한다.
- 2-1-2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한다.
- 2-2 산정기준일 현재 법 제9조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여부를 기재한다.
- 2-3, 2-3-1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및 회계감사업무(이 법 이외의 법정감사 및 임의감사를 포함한다) 매출액을 기재한다.
- 2-4 산정기준일 현재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‘외감규정’이라 한다)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를 기재한다.
- 2-4-1 평균 인원수 = 직전 산정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산정기준일까지의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(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) 합계 ÷ 12
- 2-4-2 2-4-1의 계산내역 및 인력별 품질관리업무 증빙 파일을 첨부한다.
- 2-5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지정 여부를 기재한다.
- 2-6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을 기재한다. 외화의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.
- 2-7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을 기재한다. 외화의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.
- 2-8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손해배상책임보험(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)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기재한다. 외화의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.
- 2-9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, 1년~2년 이내, 2년~3년 이내의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를 기재한다.
- 2-9-1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세부내역파일(부과일, 부과대상회사, 부과점수, 감리기관)을 첨부한다.
- 2-10 산정기준일 현재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의 여부를 기재한다.
- 2-10-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의 세부내역 파일(회사명, 고유번호, 법인등록번호, 감사업무 제한 사업연도, 증권선물위원회·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일)을 첨부한다.
- 2-11 금융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되고자 하는 회계법인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한다.

- 2-11-1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4 제4호차목에 따른 자료의 사본을 첨부한다.
- 2-12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, 심판 및 집행정지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. 이 때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.
- 2-13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의거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재한다. 이 때 선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.
- 2-14 선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「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「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이 있으면 “예”를 기재한다.
- 2-14-1 2-14에서 “예”인 경우에는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 제2호라목의 구분에 따라 세부내역(개선권고사항의 내용, 개선권고일자, 이행일자) 파일을 첨부한다.
- 2-15 제17조의2 및 별표 7 V.1.에 따른 산업전문가 보유 여부를 기재한다
- 2-15-1 2-15에서 “보유”인 경우에 각 산업전문가의 해당 산업을 별표 7 IV.1.의 산업 분류에 따라 모두 기재한다.
- 2-15-2 2-15에서 “보유”인 경우에 산업전문가 보유현황 세부내역 파일(부서, 성명, 등록번호, 전문성 보유 산업분류, 산업전문성 요건)을 첨부한다.